

## 8. 地域均衡開發및地方中小企業育成에 관한法律施行令制定(案)立法豫告

建設部公告 第1994-139號 1994. 5. 30

### 1. 제정이유

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시행과 지방중소기업의 육성을 통한 국토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(법률 제4,722호, '94. 1.7. 공포)이 1994년 7월 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건설부장관이 광역개발권역의 지정을 위하여 작성하는 광역개발권역지정안에는 권역의 범위, 개발의 기본목표, 지정기간, 개발사업의 개요등을 명시토록 하여 권역지정시 관계부처에서 미리 개발방향 및 개발사업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함.
- 나. 광역개발계획에는 광역개발사업의 내용, 사업시행방법, 투자소요규모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토록 하고, 특별히 집중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과 개발방법에 관한 사항도 명시토록 함. 이 경우 개발방법은 법 제3장의 규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 및 복합단지개발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.
- 다. 건설부장관, 직할시장 또는 도지사는 광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, 직할시 및 도의 관계공무원과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광역개발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.
- 라. 건설부장관이 직할시장,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한하여 지정토록 하되, 각 시·도별로 총면적의 10퍼

센트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함.

- ㉠ 시·군·구의 행정구역을 단위로 하여 인구증가율, 재정자립도, 주거지역내 토지(지목이 “대”인 토지)의 평균지가, 제조업종사인구 비율을 비교한 후 2개 이상의 기준에서 전국적으로 하위 20퍼센트 이하에 속하는 지역
  - ㉡ 종래의 지역산업이 쇠퇴하여 새로운 소득기반의 조성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교통망, 지리적 위치등이 인근 도시와 연계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는 지역
  - ㉢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개발권역으로 지정된 지역으로서 당해 광역개발권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특별히 집중적인 개발이 필요한 지역과,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복합단지개발사업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(이 경우 개발사업은 지방자치 단체 또는 민간개발자의 부담으로 시행토록 함)
- 마. 법 제2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민자유치대상사업의 범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과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되는 복합단지개발사업을 추가함.
- 바.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계획은 개별 사업별로 수립하되, 민간개발자의 투자범위 및 투자방법에 관한 사항, 사업시행후 시설물의 관리 및 사업수익의 배분에 관한 사항, 주변토지개발권을 부여할 경우 그 구체적인 내용 등을 명시토록 하고, 민자유치사업의 시행자 선정기준도 제시토록 함.
- 사. 국가, 지방자치단체,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지역개발법인에 출자할 경우 그 출자비율은 지역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출자액의 50퍼센트 미만으로 제한함.
- 아.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합단지중 국가 또는 지자체에 소유권을 귀속시키는 대신 무상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는 공업단지, 관광단지, 교육·연구단지, 문화단지 및 유통시설 및 시행자가 직접 사용하는 토지 또는 시설로 하고, 이 경우 50년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행자가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함.
- 자.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의 추진을 위한 정부지원금을 시·도별 자체자금 확보액과 지원효과, 경제상황 및 재정여건에 따라 배부하도록 하고, 법 제50조에서 규정한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비와, 경제상황 및 재정여건이 현저히 열위에 있는 시·도에 대한 우대지원의 근거를 마련함.
- 차. 중소기업자의 공장설립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진흥공단내에 공장설립지원단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, 정부의 행정 및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함.

- 카.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내에 지역협동기술향상 추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하고, 지방중소기업의 기술개발을 위한 조사·연구와 기술개발 지원업무를 담당하도록 함.
- 타. 중소기업 지원업무를 효과적 수행을 위해 시·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및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, 지방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한 각종 정보와 제공, 기술지도 및 연수, 공동전시 판매장 운영, 창업보육사업등을 담당하도록 함.
- 파. 지방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지정절차를 정하고, 상공자원부장관에 대하여 특별지원지역 종합지원대책 수립의무를 부과함.

### 3. 의견제출

이 시행령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94년 6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건설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
- 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), 전화번호 및 주소
- 다. 예고 항목중 (가)~(아)에 대하여는 건설부국토계획과(전화번호 500-2836), (자)~(파)에 대하여는 상공자원부 지방중소기업과(전화번호 500-2521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‘설마’하면 부실시공 ‘혹시’하면 성실시공**